

#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권순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306
----------	------

발의연월일 : 2020년 2월 5일

발 의 자 : 권순선, 전병주, 여 명,  
조상호, 황인구, 채유미,  
장인홍, 김 경, 김수규,  
양민규, 장상기, 최기찬,  
최 선 의원(13명)

## 1. 제안이유

-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와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제 교류협력 증진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와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나.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교육감은 학교의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제교류협력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 라.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시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국제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9조~제12조).
- 마.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

도록 함(안 제13조).

###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 간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와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및 업무협약 체결,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교육 지원”이란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에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육관련 기관”이란 외국의 교육 행정기관이나 학교 및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와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 교류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국제교류협력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 등을 위한 계획(이하 “국제교류협력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국제교류협력 사업)**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사업
2.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교육 및 홍보사업
3.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4. 해외 교육행정기관과의 수업 교류사업
5. 선진기술의 습득 또는 전수, 협동 프로그램 등 봉사교류 및 학술 교류에 관한 사업
6. 교환학생, 어학연수 등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학교 지원)** 교육감은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학교의 국제교류 협력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학생의 참여 확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자녀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자녀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바. 「난민법」 제2조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또는 그 자녀

사.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모든 학교의 균등한 참여 기회 확대

3.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학교의 발전 가능성

4.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각 급 학교의 국제교류협력 현황, 성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시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제교류협력 대상 기관의 선정
2. 국제교류협력 사업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국제교류협력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협력 체결,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5. 제5조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계획의 수립
6.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7. 제15조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학교의 장 또는 학부모
3.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3호·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교류 협력 업무를 추진하는 소관 부서의 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교육감은 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 14,6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text{연간위원회설치·운영비용})_i = 14,600\text{천원}$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  
연간 민간위원 여비  
= 2,100천원 + 540천원 + 280천원  
= 2,920천원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구성원 수 × 1인당 회의참석 수당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7명 × 150,000원 × 2회  
= 2,100천원

※ 참석수당 지급기준은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기본  
료 10만원, 2시간 초과 비용 5만원 등 총15만원 기준

※ 참석수당 지급대상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의원 1명 및 공무원 1명 총2명을 제외한 7명 지급 전제

·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 전체 위원 수 × 1인당 업무추진비 단가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9명 × 30,000원 × 2회  
= 540천원

※ 1인당 업무추진경비 단가는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  
라 3만원으로 가정

· 연간 민간위원 여비 = 전체 민간위원 수 × 1인당 국내여비 단가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7명 × 20,000원 × 2회  
= 280천원

※ 1인당 국내여비 단가는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2만원으로 가정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담당관  
사업평가팀장  
분석관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이정수  
원동아

☎ 02-2180-7953

e-mail : dongya1@seoul.go.kr

【붙임】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사업

(단위: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세세부사업명)	2020년 예산	사업내용
제6조 (국제교류협력 사업)	제1호	국제교류업무추진 (국제교류 일반업무)	38,920	- 내용 ·외국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구축 을 통해 교육 교류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공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교육 교류 프로그램 운영 ·프랑스 아틀리에 등 글로벌 문 화이해교육 지원 - 소요예산 : 38,920천원
	제2호	국제교류업무추진 (외국협력기관 방문교육교류, 외국협력기관 초청교육교류)	80,000	- 내용 ·MOU 체결기관과의 정기적인 교육 교류 분야 협력사업 방문 논의 ·북경 국제학생 여름캠프 등 추진 ·방문기관의 주요 교육 현황 및 시사점 파악을 통해 서울 교육 정책에 벤치마킹 ·MOU 체결기관 등과의 정기적 인 교육 교류 분야 협력사업 방 문 초청 논의 ·서울교육 및 한국 문화 홍보
	제4호 제5호	국제교류활성화지원	201,390	- 내용 ·미래 교육 혁신을 위한 학교 리 더(교장, 교감)의 역량 강화 및 교육 리더십 향상 ·해외 학교 및 교육기관과의 교류 네트워크 형성 및 국제교육에 대 한 이해 증진 ·국제적 나눔과 기부문화 실천으 로 국제교류 증진 및 서울교육의 국제적 위상 제고 ·해외 교육기관, 해외 동포, 외국 학생에게 한글 도서, 악기, 한복 기증을 통한 한국문화의 세계화 기여 ·개발도상국(저개발국가)에 서울 교육의 노하우 및 우수사례 전수 를 통한 글로벌 교육교류 추진 ·과학, 미술, 음악, 체육(무용),

구분	세부사업명 (세세부사업명)	2020년 예산	사업내용
			보건(위생), 국어(한글) 등 해외 교육 봉사를 통한 상대국과의 우호 협력관계 증진 및 교육 네트워크 구축
제7조(실태조사)	서울시교육청에서 각급학교로 공문을 통한 실태조사 매년 실시 (첨부자료1'2019년 해외학교(기관)와의 MOU 체결 및 국제교류 현황 제출' 참고)		

자료: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제6조(국제교류협력 사업)제3호 및 제15조(학교 지원),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관련사항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 및 각 사업방침서 발취

구분	사업명	사업주관처
1	2019 한·일 중고생 교류사업 방일단 방문학생 선발	국립국제교육원
2	2019 한·일 상대국어선택 고교생 교류사업 방일단 대상학생 선발	국립국제교육원
3	2019년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참가학생 선발	교육부(서울교대)
4	2019년 북경 국제학생 여름캠프 참가	중국베이징 BIEE

주: 1. 각 사업에 대한 방침서는 첨부자료 참고  
2. 각 사업에 대한 2020년 방침서는 수립 중  
자료: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제출 자료

2019 한·일 중고생 교류사업 방일단 방문학생 선발

○ 선발 대상 :총11명

- 우선 선발 신청 자격: 사회경제적 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한부모가정, 차상위 계층, 급식지원대상자 등)로 인정받은 학생

○ 교육 목적과 내용

- 연수국의 교육, 역사, 지리, 문화 등 사전 지식 습득  
- 연수 취지와 목적 이해

○ 연수내용

- 학교 방문, 학생과 교류, 견학, 홈스테이 등

2019 한·일 상대국어선택 고교생 교류사업 방일단 대상학생 선발

○ 사업 추진 방향

- 방문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일정 수 선발

※ 우선 선발 신청 자격: 사회경제적 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한부모가정, 차상위 계층, 급식지원대상자 등)로 인정받은 학생

○ 교육 목적과 내용

- 연수국의 교육, 역사, 지리, 문화 등 사전 지식 습득  
- 연수 취지와 목적 이해

○ 연수내용

- 학교 방문, 학생과 교류, 견학, 홈스테이 등

□ 2019년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참가학생 선발

○ 사업목적

- 3국 어린이들이 체험학습과 독서활동을 통해 상대국의 문화를 배우고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협력 기반 조성

○ 대회 주요 내용

- (어린이) 각국의 전래동화 소개, 자연 공동답사 체험을 바탕으로 그림책을 만들어 발표하는 등 상호 교류 프로그램 참가
- (참가 경험자) 참가 경험 교류, 친목활동 및 한일중 미래교류 플랜 구상

□ 2019년 북경 국제학생 여름캠프 참가

○ 사업 목적

-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고 국제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국의 만14-18세의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북경시교육위원회에서 후원하는 국제학생캠프

○ 선발대상

-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1교 총 10명

※ 20% 이내 사회 경제적 배려대상자 우선 선발, (사회경제적 배려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한부모가정, 차상위 계층, 급식지원대상자 등으로 인정받은 학생)